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2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한정애·송옥주·김태년

문진석 · 임오경 · 이학영

박홍근 · 김영배 · 정일영

박희승 • 추미애 • 이건태

박수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소위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음. 그 대표적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까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에 비하여 법정최고이자를 훨씬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등 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떨어지게 됨. 하지만 이는 판례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 렌탈을 악용한 내구제 대출의 피해 사례도 계속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내구제 대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에서는 소위 카드깡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 대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휴대폰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부정한 자금 융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할부거래 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2.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7조의2(부정한 자금 융통 등
	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금을
	<u>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u>
	<u>알선·권유·광고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
	1. 재화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할
	부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
	게 하는 행위
	2.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로 구매
	하도록 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u> <신 설></u>	제48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
	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
	여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
	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
	권유·광고를 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